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은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027

발의연월일: 2024. 8. 21.

발 의 자:최은석·박충권·이인선

임이자 • 이달희 • 박정훈

정연욱 • 박정하 • 이종배

서지영 · 이성권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배우자 상속공제와 증여재산 공 제 등의 공제제도를 통하여 상속 및 증여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고 있음.

그러나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 5억원은 1997년 이래 동일한 금액을 유지하고 있는 등 공제금액이 물가변동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,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과 GDP 대비 상속세 및 증여세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세부담을 현행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을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고, 증여 재산 공제 금액을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(안 제19조 및 제53조 등).

법률 제 호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5억원"을 각각 "20억원"으로 한다.

2. 60억원

제53조제1호 중 "6억원"을 "12억원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배우자 상속공제 및 증여재산 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19조제1항 및 제5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(배우자 상속공제) ① 거주	제19조(배우자 상속공제) ①
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	
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	
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	
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	
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30억원	<u>2. 60억원</u>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	4
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	
상속받은 금액이 <u>5억원</u> 미만이	<u>20억원</u>
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<u>5억원</u>	<u>20</u> 억 원
을 공제한다.	
제53조(증여재산 공제) 거주자가	제53조(증여재산 공제)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	
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	
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	
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	
세가액에서 공제한다. 이 경우	
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	
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	
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	

받은 금액(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)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 제하지 아니한다.

-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
 경우: 6억원
- 2. ~ 4. (생 략)

1
<u>12</u> 억원
2 ~ 4 (현행과 같음)